

# 2015년 제4회 원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## 개최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2015.10.22.(목) 10:30, 집현실
- 참석위원 : 총 10명
  - 위원장 : 부원장 (신창호)
  - 위 원 : 9명 (연구실장 및 센터장)
- 심의안건
  -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
  - 운영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
  - 내부감사규칙 일부개정(안)
  - 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(안)

## 심의결과 : 원안의결

## 심의안건 및 주요내용

- 징계양정세부기준 및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  
※ 신규 징계양정기준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입찰비리 및 불공정 행위	없음	신설
채용비리 연루	없음	신설
직무 및 대가, 수수금액을 불물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	없음	신설

-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인원수를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하고자 함.
- 내부감사규칙 제3조(감사구분)에 외부인 감사관 임명 규정 신설.
- 차종별 용도지정 일부개정 및 '차량을 이용한 출·퇴근 허용' 신설

## 기타의견 :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  
2. 운영위원회운영규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  
3. 내부감사규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  
4. 차량관리규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. 끝.

# [붙임1] 징계위원회운영규칙 신구조문대조표

## 신구조문대조표

### 징계양정 세부기준<별표 1-1>

현행							개정 (안)									
구분	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비고	구분	징계사유	징계기준					비고	
	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감봉 이상				견책 이상	파면	해임 이상	강등 이상	정직 이상		감봉 이상
1. 복무 및 품위	5.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							5.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								
	가.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						○	가.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							○	
	나. 직무수행을 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						○	나. 직무수행을 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							○	
	다.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○	다.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	○	
	라.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○	라.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	○	
	마.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,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						○	마.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,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							○	
	바.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○	바.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							○	
	사.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						○	사.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							○	
	아.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급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						○	아.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급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							○	
	자.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		○					자.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		○						
	차.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						○	차.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							○	
	<신설>							<b>카. 일탈비리 및 불공정 행위</b>				○				<b>발생시 전보조치</b>
	6. 감사거부 및 방해							6. 감사거부 및 방해								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경우						○	가.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경우							○		
<신설>																
<신설>							<b>7. 인사비리</b>									
							가. 채용비리 연루	○							<b>비위채용자는 응시자격 박탈</b>	



[붙임2] 운영위원회운영규칙 신구조문대조표

**신구조문대조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<u>10인 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<u>15인 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[붙임3] 내부감사규칙 신구조문대조표

**신구조문대조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감사구분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신 설 &gt;</p>	<p>제3조(감사구분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원장은 필요할 경우 반부패 청렴업무에 외부인을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.</p>

[붙임4] 차량관리규칙 신구조문대조표

**신구조문대조표**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차량의 구분) ① (생략)</p> <p>② 차량의 <u>차종·차형</u> 및 최단운행 기준은 &lt;별표1&gt;과 같다.</p> <p>&lt;별표1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차종별 차형 및 내구연한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차 종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차 형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내 구 연 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승 용 (업무용)</td> <td>대형승용차</td> <td>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승 용 (업무용)</td> <td>중·소형승용차</td> <td rowspan="2">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</td> </tr> <tr> <td>승합승용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차 종	차 형	내 구 연 한	승 용 (업무용)	대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	승 용 (업무용)	중·소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	승합승용차	<p>제3조(차량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차량의 <u>차종·용도·차형</u> 및 최단운행기준은 &lt;별표1&gt;과 같다.</p> <p>&lt;별표1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차종별 차형 및 내구연한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차 종 (용 도)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차 형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내 구 연 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승 용 (전 용)</td> <td>대형승용차</td> <td>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승 용 (업무용)</td> <td>중·소형승용차</td> <td rowspan="2">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</td> </tr> <tr> <td>승합승용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차 종 (용 도)	차 형	내 구 연 한	승 용 (전 용)	대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	승 용 (업무용)	중·소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	승합승용차
차 종	차 형	내 구 연 한																			
승 용 (업무용)	대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																			
승 용 (업무용)	중·소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																			
	승합승용차																				
차 종 (용 도)	차 형	내 구 연 한																			
승 용 (전 용)	대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 12만km이상																			
승 용 (업무용)	중·소형승용차	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12만km이상																			
	승합승용차																				
<p>제3장 차량관리 및 운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신 설 &gt;</p>	<p>제3장 차량관리 및 운행</p> <p>제14조의1(차량을 이용한 출·퇴근 허용) 원장은 연구원 차량 중 전용차량에 대해 출·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